

일련번호	1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2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칠백의총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보증서 및 하자보증서 징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칠백의총관리소

내 용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 휴게소 및 매점 지붕보수공사’를 ◎◎건설(주)와 계약(계약기간 ‘14.3.31. ~ ‘14.6.5./계약금액 62,526,000원)하였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특히 계약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상기 관리소는 계약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지급확약서’만을 제출토록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상기 관리소는 ‘칠백의총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주)△△△△△△△△△과 계약(계약기간 ‘14.4.1.~‘14.5.21./계약금액 50,000,000원)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후 상기 보증금을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상기 관리소는 하자보수보증금이 아닌 ‘하자보증이행각서’(보증기간 ‘14.5.22. ~ ‘16.5.21.)만을 제출받은 후 공사 대가를 지불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향후 계약 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도록 하며, 하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칠백의총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징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칠백의총관리소	소 장 ○ ○ ○	'11.5.25~현재	재 무 관	칠백의총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서기 ○ ○ ○	'13.5.20~현재	재무관보조	칠백의총관리소

일련번호	2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칠백의총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소장 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칠백의총관리소

내 용

칠백의총관리소는 '중봉선생교지(보물제1007-2호)' 등 167점의 유물을 소장·관리하고 있다.

「유물취급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15호)」 제4조(유물대장)에 따르면 유물을 소장한 기관은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유물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11조(유물의 소독·포쇄 및 일반관리)에는 소장 유물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소독 및 포쇄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상기 관리소는 유물대장을 「유물취급규정」 상의 서식과 다르게 작성하였고, '13.11월 이후 현재까지 소장 유물에 대한 소독 및 포쇄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유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유물을 보관하는 관리 창고 내 제향행사용품 등이 혼재되어 있고, 동 창고 내 항온 및 제습 시설이 미흡하며, 1960년대 제작된 현판 등 보관 자료가 습기·먼지 등에 노출되어 있는 등 유물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하였다.

조치할 사항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향후 소장 유물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보유 유물 대장을 현행화하고, 현재 보유한 유물의 유형별로 적절한 보관 방안을 마련하며, 추후 유적 종합정비 시 유물의 적절한 보관·관리를 위한 개별 공간 마련 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3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칠백의총관리소

관련 규정 개정요구

제 목 유물취급규정 관련 사항

관계기관 유형문화재과

내 용

유형문화재과에서는 우리 청이 소장한 유물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물취급규정」을 마련('99.6.1.)하여 소장 유물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나, 동 「유물취급규정」상 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한 '유물 포쇄'는 고도서 등에 대한 고전적인 보존처리 방법으로 훈증 등 현대화된 보존처리 방법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져 보존처리 현장에서 사장되어 가는 방법으로 상기 규정이 사문화 될 우려가 있고,

※포쇄 : 사고 등에 보관된 서적, 혹은 물에 젖은 물건 등을 꺼내 습기를 말리고 두충을 막기 위해 바람을 쐬고 햇볕에 말리는 일(한국고전용어사전)

사찰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하여 운영하는 전시관의 유물관리를 규정한 「사찰유물 전시관 건립 및 운영·관리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268호)」·「유적전시관 등의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189호)」과 달리 유물의 적절한 보관 관리를 위한 유물창고 및 유물의 보존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이 미흡하여 운영 주체에 따라 유사 유물의 보관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소장 유물이 부적절하게 보관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유형문화재과장은 「유물취급규정」상 '유물포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과 유물의 적절한 보관 관리를 위한 유물창고 및 유물의 보존 관리에 대한 세부 지침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4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1명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칠백의총관리소

주 의 요 구

제 목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계획 용역 감독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칠백의총관리소

내 용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 유적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주)△△건축사사무소와 계약(계약기간 '14.2.7. ~ '14.5.10./계약금액 26,553,000원)하여, 용역감독공무원으로 □□주사 ○○○을 임명한 뒤 '14.5.1. □□□□운영서기 ○○○로 변경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7조(감독 및 검사) 에 따르면 감독 또는 검사를 한 자는 감독 또는 검사의 결과 계약이행의 내용이 당초의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감독조서 또는 검사조서에 기재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상기 관리소는 해당 용역을 수행하며 자문회의를 3차례(1차 '14.3.14., 2차 '14.4.25., 3차'14.5.12.)에 걸쳐 실시하였고, 제3차 자문회의 심사를 당초 계약 만료일 이후인 '14.5.12.에 실시함에 따라 용역을 계약 만료일인 '14.5.10.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상기와 같이 계약이행 내용이 당초의 계약 내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감독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러한 사실 및 조치에 관한 의견을 소속 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용역기간 연장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타당하나, 계약 완료 10일전 변경된 감독공무원의 계약업무 이해부족 등을 사유로 이런 행정처리를 하지 않았고, 계약완료일까지 용역이 완수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하게 완수된 것으로 처리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칠백의총관리소장은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용역 등의 감독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합니다.

[관련자]

소 속	직·성명	담당기간	담당업무	현근무처
칠백의총관리소	□□□□윤영서기 ○○○	'14.5.1~현재	감독공무원	칠백의총관리소

일련번호	5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3,193,395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칠백의총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칠백의총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칠백의총관리소

내 용

칠백의총관리소는 칠백의총(사적 제105호) 경역 내 수목 밀식으로 인하여 수목의 올바른 식생이 어려워 간벌 및 이식을 통하여 사적지 위상에 걸 맞는 역사 경관을 유지하고자 「칠백의총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단위:천원)

사업명	계약일자	계약방법	시공사	준공금액	공사기간	하자책임 보증기간	비고
칠백의총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14.4.1	공개경쟁	(주)□□□□ □□□□	50,000	'14.4.7~5.21	'14.5.22~ '16.5.21(2년간)	

칠백의총 수목환경 개선사업은 수목 간벌 및 전정공사 250주, 이식공사 20주 등을 시행한 사업이나 동 사업의 하자여부에 대하여 자체감사기간(2015.3.2~6)중 현지 확인 결과 이식 소나무 20주 중 5주(R22)가 고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칠백의총관리소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하자검사(2014.7.11, 12.24)를 실시하였으나 당시에는 수목의 완전 고사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하자가 없는 것으로 검사하였음.

조치할 사항

칠백의총관리소장은 (주)□□□□□□□□□□ ○○○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 제③항 따라 고사된 수목에 대하여 하자보수(재시공 금액 3,193,395원)를 요청하시고 '문화재수리공사표준시방서' 및 '조경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공고 제2008-673호) 고사식물(고사율에 따른 지급 수목재료의 보수 의무)의 하자 보수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6	감 사 자	5급 ○○○, 6급 ○○○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칠백의총관리소

법령상 개선요구

제 목 문화재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수리기술과

내 용

문화재수리업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배치) 시행령 제18조(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시행규칙 제17조(문화재수리 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문화재수리 기술자를 배치할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하여금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건설(주) 대표 ○○○은 칠백의총관리소에서 발주한 '칠백의총 휴게소 및 매점 지붕 보수공사' ('14.4.7~6.5.)에 대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문화재수리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면서 '현장 배치 확인표'를 제출하지 않아 중복으로 배치된 수리현장 현황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관련 법령규정 미비로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리기술과장은 현행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문화재수리업자가 '현장배치 확인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조항이 없어 중복배치 여부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문화재수리업자등의 행정처분 기준) [별표 2]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	감 사 자	5급 〇〇〇, 6급 〇〇〇		공 개 ()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칠백의총관리소

시 정 요 구

제 목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칠백의총관리소

내 용

칠백의총관리소는 「국유재산법」 제31조(사용허가의 방법) 시행령 제27조 제③항의 규정에 따라 〇〇〇에게 2014.3.16.~2015.3.15.(1년)일까지 다음과 같이 국유재산(행정 재산)에 대한 ‘국유재산(유상)허가서’를 교부하였다.

(단위:㎡ / 원)

성명	구분	사용허가 지번	지목	사용목적	면적	사용료
〇〇〇	행정재산	충남 금산군 〇〇면 〇〇리 589-3번지	전	경작용	454	310,530

상기 국유재산은 당초 사용목적(단년생 작물의 재배/경작용)과 다르게 이동식 컨테이너(1동)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다량의 조경수(소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당초 허가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상태로 이용 중에 있었으며, 동 국유재산이 '97년까지 직원관사 용도로 사용되었으나 현 직원 관사가 건축되면서 구 관사 건물은 철거되면서 행정재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로 관리 중에 있다.

또한 2015. 4월 현재 직원관사로 사용 중인 충남 금산군 〇〇면 〇〇리 499번지에 위치한 관사(2동)가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1989.11.18.)을 받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정한 지목변경 절차(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60일 이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목이 대지가 아닌 전(田)으로 관리 중에 있다.

(단위:m²/원)

대지위치	대지면적	지목	건축용도	건축구조	지붕	층수	연면적
소계				2동			484.45
충남 금산군 ○○면 ○○리 499	1,806	전	관사(주택)	철콘조	아스팔트싱글	1층	108.47
			관사(주택)	철콘조	아스팔트싱글	2층	375.98

조치할 사항

칠백의총관리소장은 국유재산(유상)사용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중인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관리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및 ‘국유재산(유상)허가서’ 교부조건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관사가 건축된 필지에 대한 지목변경(전→대지) 절차를 이행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